

장애인은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쉬운정보



**장애인은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이 안내서는 쉬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을 쉽게 풀어 쓰고 단어를 쉽게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정보는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 이 안내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를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꼭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가 협약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뒤쪽에 있는 부록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전문 등 쉽게 바꿀 수 없는 정보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부록을 혼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진정’은 ‘Individual Communication 인디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한국어로 번역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개인진정’ 대신 ‘개인통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선택의정서에도 ‘개인통보’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서에서는 ‘개인통보’ 대신 ‘개인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장애와 관련된 사람들과 단체가 그동안 ‘개인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서는 주로 장애인 당사자가 읽을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인 ‘개인진정’을 사용합니다.

순서

알아두면 좋은 단어	6
들어가는 말	9
1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란?	10
2장 개인진정은 누가 할 수 있나요?	16
3장 개인진정을 하기 전에	20
미리 해야 할 일이나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나요?	
4장 개인진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0
5장 개인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6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개인진정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38
7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44
개인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8장 직권조사란 무엇이고,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46
9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50
부록1 유엔 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서식	52
부록2 유엔 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지침	56
부록3 참고 자료	60
부록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62
부록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전문	66

알아두면 좋은 단어

UN유엔

UN유엔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국제 기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러 국가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엔에는 193개의 국가가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엔에서 정한 약속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로 한 국가들이 협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를 이용해서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문서입니다.

침해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합니다.

구제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나 제도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되찾는 과정을 ‘구제절차’라고 합니다.

“단어의 뜻을 알고 나면 이 안내서가 더 쉬워질 거예요.
안내서를 읽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여기로 돌아와서
단어의 뜻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진정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권조사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한 사건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복해서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는 정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알게 되었을 때 직권조사를 합니다.

진정인

개인진정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인진정을
대신 할 때도 그 사람을 진정인이라고 부릅니다.

비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같은 조약*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조약을 비준합니다.

* 조약 : 여러 국가가 함께 정한 약속. 협약도 조약의 한 종류다.

발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같은 조약이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약이 비준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조약이 발효됩니다.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조약이 발효된 후에 조약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들어가는 말

이 안내서는 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2009년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로 약속한 국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따를지 말지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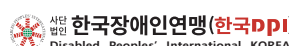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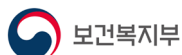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를 이용해서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문서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없으면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해도 장애인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2월 15일에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로 약속한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장애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의 노력, 정부와 국회의 결정 덕분에 드디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따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대한민국의 법이나 제도가 해결하지 못할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대한민국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서는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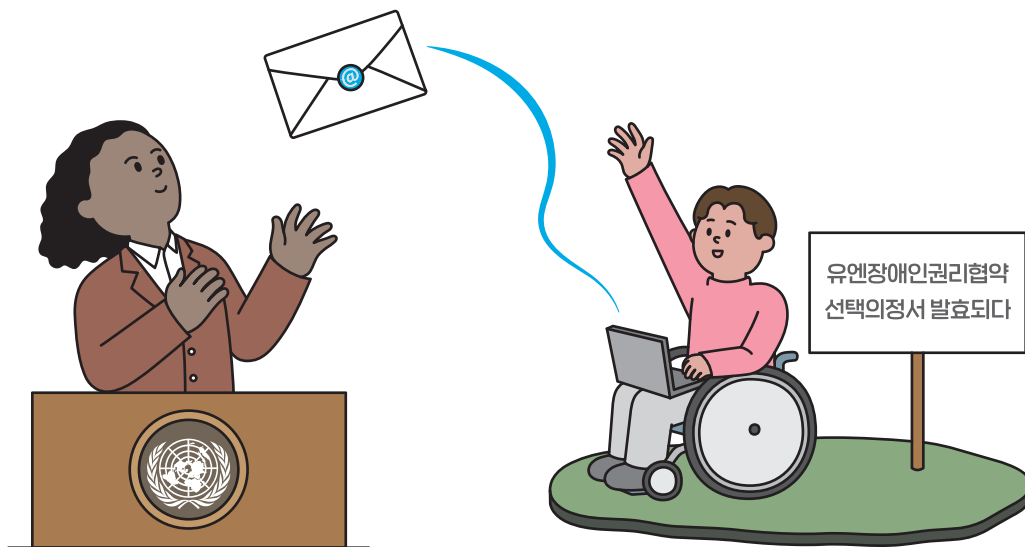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일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안내서가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 12. 29.



1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무엇인가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를 이용해서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문서입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짧게 줄여 ‘선택의정서’라고 부릅니다. 선택의정서가 무엇인지 알려면 유엔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엔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국제 기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러 국가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엔은 193개의 국가가 가입한 국제 기구이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엔에서 정한 약속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일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로 약속한 국가는 선택의정서를 따를지 말지 추가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더 알아보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유엔에서 정한 약속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목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기회와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교육, 건강, 취업 등 장애인의 권리가 적혀있고, 국가가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전문	협약을 만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글	
본문	1조~8조 (협약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	협약의 일반 원칙, 평등과 비차별, 장애 여성, 장애 아동,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9조~32조 (장애인의 실제 권리에 대한 내용)	교육, 건강, 일자리, 자립 생활, 생명을 지킬 권리, 법 앞에서 평등하기, 정치·선거에 참여할 권리 등
	33조~40조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대한 내용)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가 유엔에 내야 하는 보고서 등
	41조~50조 (협약의 절차에 대한 내용)	비준, 발효 등
선택의정서	개인진정, 직권조사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더 궁금하다면?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사례로 보는 UN장애인권리협약』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 50개 조항으로 살펴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단체 공동 발행, 2013)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더 알고 싶다면 책을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의 조약

조약 이름	비준한 날짜	발효한 날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1990년 4월 10일	1990년 7월 10일
↳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1990년 4월 10일	1990년 7월 10일
↳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비준하지 않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1990년 4월 10일	1990년 7월 10일
↳ 선택의정서	비준하지 않음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년 12월 5일	1979년 1월 4일
여성차별철폐협약	1984년 12월 27일	1985년 1월 26일
↳ 선택의정서	2006년 10월 18일	2007년 1월 18일
고문방지협약	1995년 1월 9일	1995년 2월 8일
↳ 선택의정서	비준하지 않음	
아동권리협약	1991년 11월 20일	1991년 12월 20일
↳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2004년 9월 24일	2004년 10월 24일
↳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2004년 9월 24일	2004년 10월 24일
↳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비준하지 않음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하지 않음	
장애인권리협약	2008년 12월 11일	2009년 1월 10일
↳ 선택의정서	2022년 12월 15일	2023년 1월 14일
강제실종자협약	2023년 1월 1일	2023년 2월 3일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선택의정서가 왜 중요한가요?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정서에
나와있는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를 활용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고,
2009년 1월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2년 12월에 선택의정서를 비준했고,
2023년 1월부터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서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뿐만 아니라 다른 조약을 통해서도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유엔에서 정한 다른 조약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들에도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들을 통해서도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엔국제노동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해
개인진정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란?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에 속한 또 다른 기관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특별절차’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별절차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해 다양한 국가,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하는 것보다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구제절차를 마치지 않았어도 개인진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는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2장

개인진정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직접 개인진정을 해야 하나요?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직접 개인진정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꼭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개인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난민*이나 망명**을 온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개인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난민 : 전쟁이나 재난 때문에 원래 살던 국가를 떠나게 된 사람

** 망명 :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원래 살던 국가를 떠나는 것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개인진정을 꼭 직접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진정을 대신 하는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대신 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개인진정을 하든, 다른 사람이 대신 하든,
개인진정을 하는 사람은 모두 '진정인'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적어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진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가 없어도 개인진정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동의서를 직접 쓰기 어려운 어린아이일 때 부모, 보호자가
개인진정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지내고 있는 병원이나 감옥 등 시설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막을 때 개인진정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자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피해자가 개인진정을 직접 할 수 없는 이유, 동의서를 쓸 수 없는 이유를
적어서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피해자 대신 개인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개인진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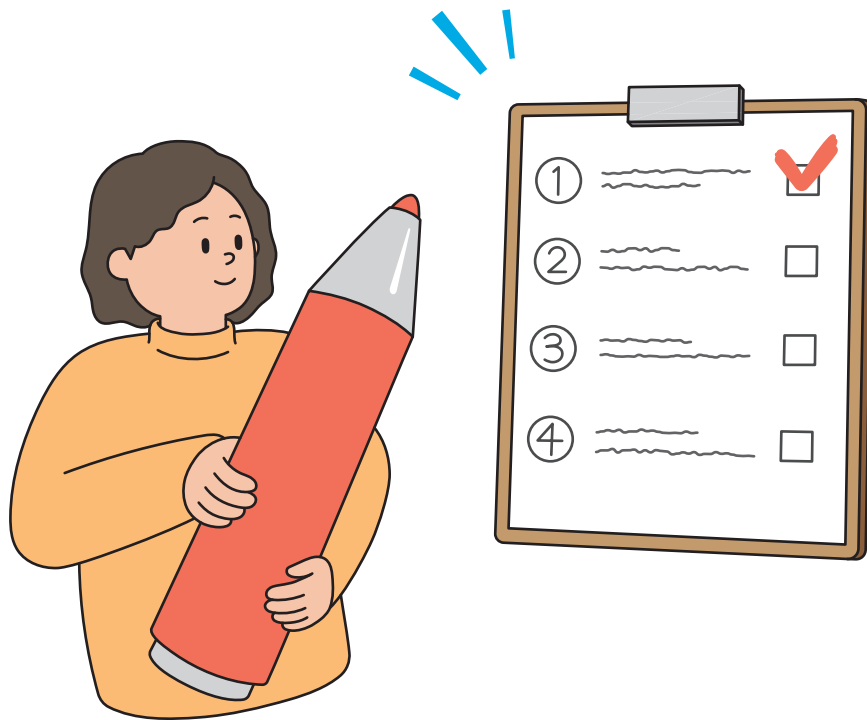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로 약속한 국가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곳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의 위원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장애 전문가들입니다.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따르기로 약속한 국가들이 모여 투표로 뽑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하는 일

-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의견을 줍니다.
- 권리를 침해당한 장애인의 개인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아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반복해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직권조사를 합니다.
-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국가에 이야기합니다.

3장

개인진정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나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나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개인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피해자가 개인진정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개인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개인진정을 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사건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인진정을 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개인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진정을 해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조건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6가지입니다. 3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개인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알아봅니다.

1.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

개인진정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꼭 밝혀야 합니다.
이름, 연락처 등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는 정보가 없으면
개인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인진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대한민국 모두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모두 살펴본 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최종 결정 문서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진정서 서식을 보면, 이름을 공개할지 말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하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개인진정서’는 개인진정을 할 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개인진정서 서식은
개인진정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만들어 놓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2. 장난으로 반복해서 개인진정을 하거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상관없는 내용일 경우

장난으로 또는 일부러 반복해서 개인진정을 하면
개인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진정의 내용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와 상관없는 내용일 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 이미 결과가 나온 사건으로 다시 개인진정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살펴보는 중인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이미 살펴보고 결과가 나온 사건은 다시 개인진정 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진정을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아닌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유엔에서 정한 다른 조약을 이용해서 개인진정을 하고 이미 결과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유엔에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같은 사건을 이미 살펴봤거나 살펴보는 중인 경우에도 개인진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기관에는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인권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진정을 하기 전에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권리를 되찾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유엔에 속한 기관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유엔의 어떤 조약을 이용해서 개인진정을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에서 구제절차를 다 마치지 않은 경우

개인진정은 대한민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다 마쳤는데도 권리를 되찾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다 마치지 않았다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개인진정 사건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구제절차는 정해진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정부나 공공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에서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등법원, 대법원 등 더 높은 법원에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면 구제절차를 다 마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구제절차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제절차를 다 마치지 않았어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개인진정을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구제절차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거나 구제절차를 이용하더라도 권리를 되찾기 어려워 보이면 개인진정을 받아줍니다.

5.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국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어겼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사건을 더 이상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진정을 할 때는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어떤 내용을 지키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녹음 파일 등의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 일을 함께 보고 들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개인진정 사건을 살펴볼 때, 직접 조사하지 않고 진정인과 대한민국이 제출한 문서만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침해당했는지를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6. 피해 사건이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일어난 경우

대한민국에서 선택의정서는 2023년 1월 1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만
살펴봅니다.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피해 사건 중 2023년 1월 14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건이 2023년 1월 14일 이전에 일어났더라도,
피해가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사건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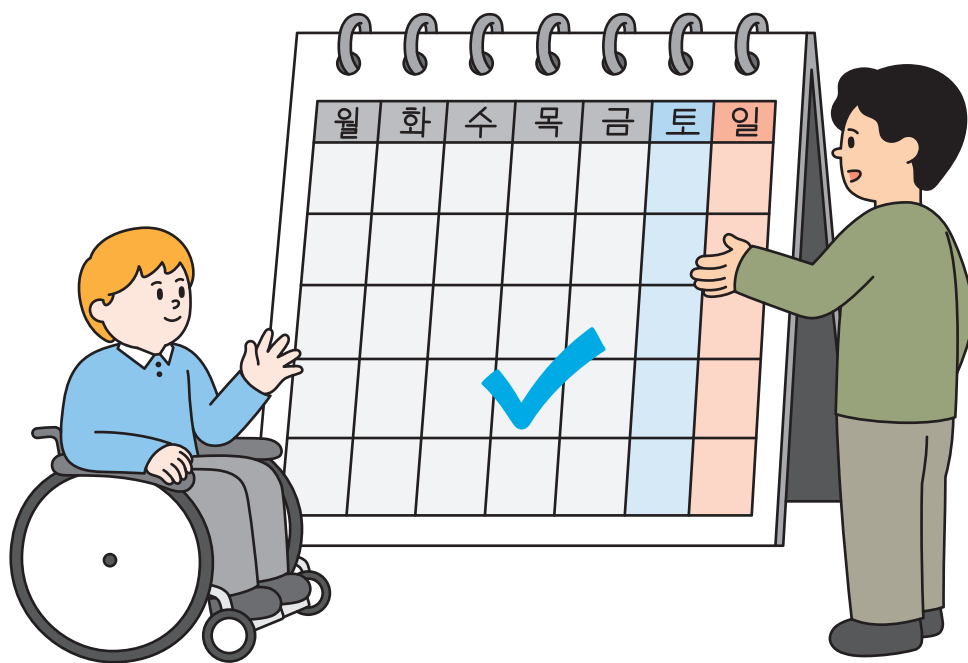
**개인진정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개인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개인진정을 하고 싶으면 선택의정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진정이 받아들여지려면 앞에서 살펴본 6가지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찾아 개인진정서에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4장

개인진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인진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빨리 개인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 개인진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구제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되도록 빨리 개인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진정이 늦어지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고, 대한민국도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인진정이 늦어지면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개인진정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구제절차를 모두 마친 뒤,
곧바로 개인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장

개인진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변호사 없이 혼자서 개인진정서를 써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진정을 하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진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진정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개인진정서 서식은 이 안내서 40쪽에 나와있습니다. 개인진정서를 쓰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서는 유엔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써야 합니다. 우선 한국어로 쓰고 난 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인은 컴퓨터에서 개인진정서 파일에 직접 하면 됩니다. 또는 빈 종이에 사인을 한 뒤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개인진정서 파일과 함께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 메일 주소 petitions@ohchr.org

- 개인진정서 파일을 메일로 보낼 수 없다면, 개인진정서를 인쇄해서 아래 우편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단, 메일로 보낼 수 없는 이유를 써야 하고, 개인진정서 종이가 20쪽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 우편 주소

Petitions and Urgent Actions Section
OHCHR, Palais des Nations,
Avenue de la Paix 8-14, 1211 Geneva, Switzerland

개인진정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① 어떤 조약을 이용해서 어떤 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하는지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그 국가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 ② 개인진정을 하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써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대신 다른 사람이 개인진정서를 쓴다면, 피해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이유도 개인진정서에 써야 합니다.
- ③ 피해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또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했는지도 시간 순서대로 써야 합니다. 피해자가 기관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 기관에서 받은 결정의 내용 등도 써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구제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았다면, 왜 마치지 않았는지 이유를 써야 합니다. 구제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 개인진정을 하는 이유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④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을 쓸 때는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써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어떤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써야 합니다. 피해 사건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아닌 다른 국제 기관에서 살펴본 적이 있는지도 써야 합니다.
- 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사건을 모두 살펴보고 결과를 공개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다고 개인진정서에 쓰면 됩니다. 혹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개인진정서를 제출할 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란?

고문이나 사형처럼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일 때는 임시조치를 신청해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개인진정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고문이나 사형을 하지 말아달라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개인진정 사건을 꼭 살펴보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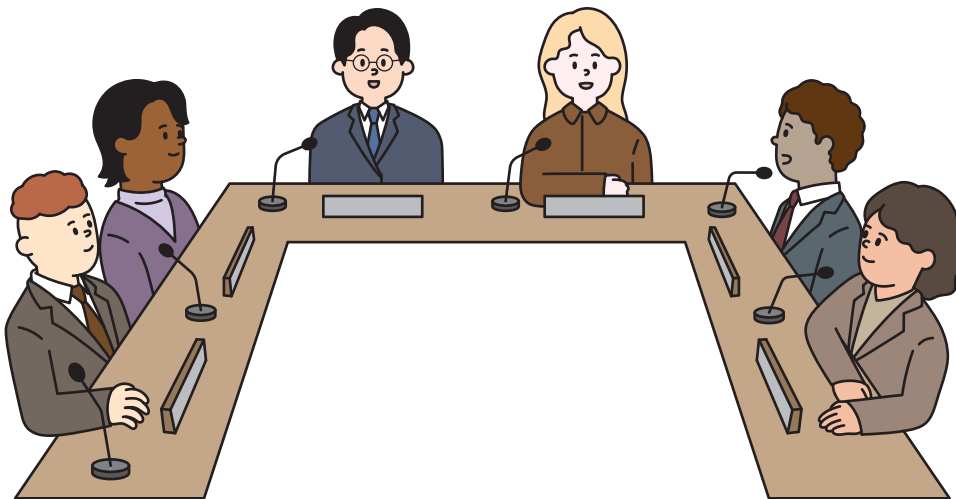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여러 날이 걸립니다. 결정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요청을 전달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임시조치가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진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도 있나요?

- ① 개인진정서뿐만 아니라 구제절차와 관련된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했다면 그때 받은 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 같은 문서가 있습니다.
-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복지법」 등 대한민국 법이 영어로 적힌 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구제절차와 관련된 법이면 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구제절차와 관련된 문서를 살펴볼 때, 대한민국 법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영어로 적힌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 ③ 모든 문서는 날짜 순서대로 파일에 번호를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엔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언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쓴 문서가 아니라면, 이 언어 중 하나로 문서 내용을 번역해서 보내야 합니다. 전부 번역하기 어렵다면 내용을 요약한 뒤, 요약한 내용만 번역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문서는 다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원본이 아닌 복사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개인진정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인진정 처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 개인진정을 처리합니다. 3가지 단계는 순서대로 개인진정을 등록하는 단계, 개인진정을 심사하는 단계, 심사 결과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개인진정을 하면 스위스에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라는 곳에서 개인진정서를 받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전달합니다. 개인진정서의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진정은 취소됩니다.

개인진정을 처리하는 과정

- ① 개인진정 사건을 등록하는 단계
- ② 개인진정 사건을 심사하는 단계
- ③ 심사 결과를 알리는 단계

1. 개인진정 사건을 등록하는 단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심사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심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을 등록하고,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 알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6개월 안에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진정 사건을 심사하는 단계

개인진정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개인진정서가 조건에 맞게 잘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한 다음에는 개인진정을 한 진정인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어기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개인진정 내용에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서류를 진정인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에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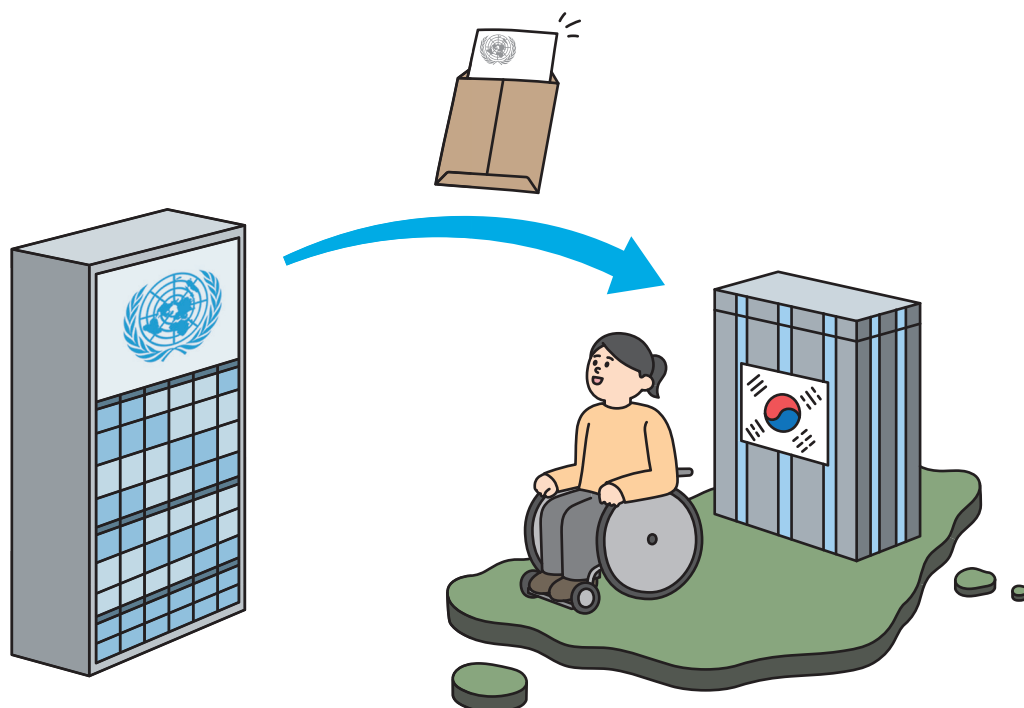
진정인과 대한민국이 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심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3. 심사 결과를 알리는 단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개인진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결정 내용을 진정인과 대한민국에 동시에 전달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어겼다는 결정을 내리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어떤 내용을 어겼는지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립니다.

7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개인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이후의 과정이 다릅니다

①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어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진정인과 대한민국의 주장을
모두 살펴봤으나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결과를 장애인과 대한민국에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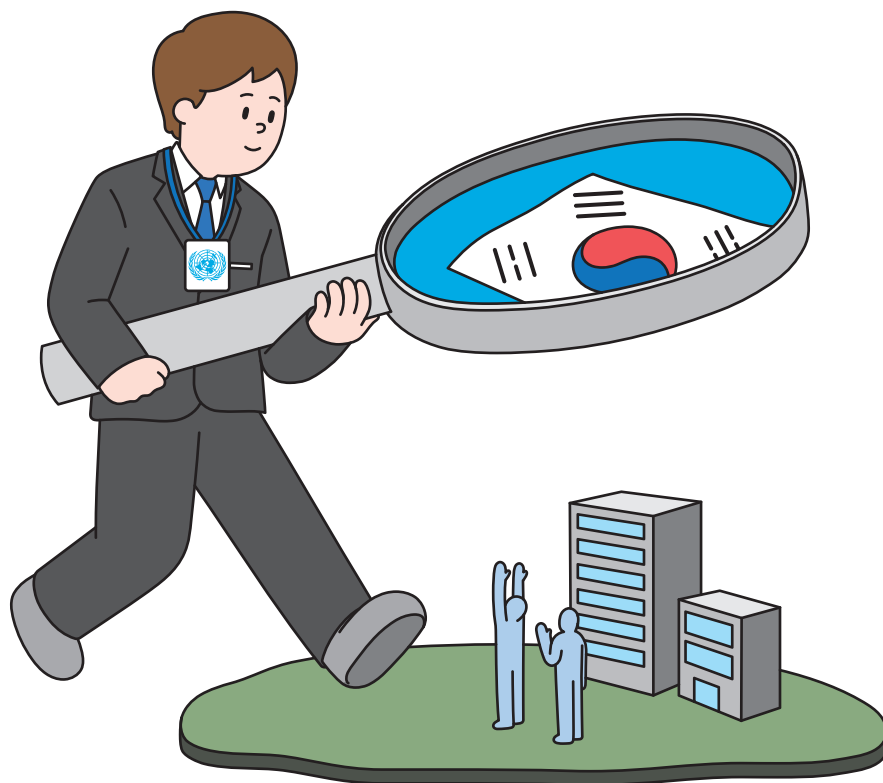
②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어긴 경우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진정인과 대한민국의 주장을
모두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 결과를 장애인과 대한민국에 알립니다.
이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어서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대한민국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은 바꿀 수 없는 최종 결정입니다.

8장

직권조사란 무엇이고,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권조사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대한민국에 직접 와서 피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직권조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복해서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직권조사를 합니다.

직권조사는 개인진정과 다릅니다.

개인진정은 장애인이 제출한 문서로 사건을 살펴보지만,

직권조사는 위원이 대한민국에 직접 와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직권조사를 하러 온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진정과 다르게, 직권조사는 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구제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회 :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물어보는 모임

하지만 대한민국이 동의해야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권조사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직권조사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 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복해서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우선 정보가 믿어도 되는 정보인지 살펴봅니다.
- ② 믿어도 되는 정보라고 판단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대한민국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피해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조사를 진행할 위원이 결정되면,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결정한 뒤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원은 대한민국에 직접 찾아와서 조사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조사를 다 마치고 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위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결과를 평가한 내용과 대한민국에 요청할 내용을 적어서 대한민국에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이 내용을 받고 6개월 안에 답변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요청한 내용을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조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직권조사 절차’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직권조사 절차’ 페이지
www.ohchr.org/en/treaty-bodies/crpd/inquiry-procedure

직권조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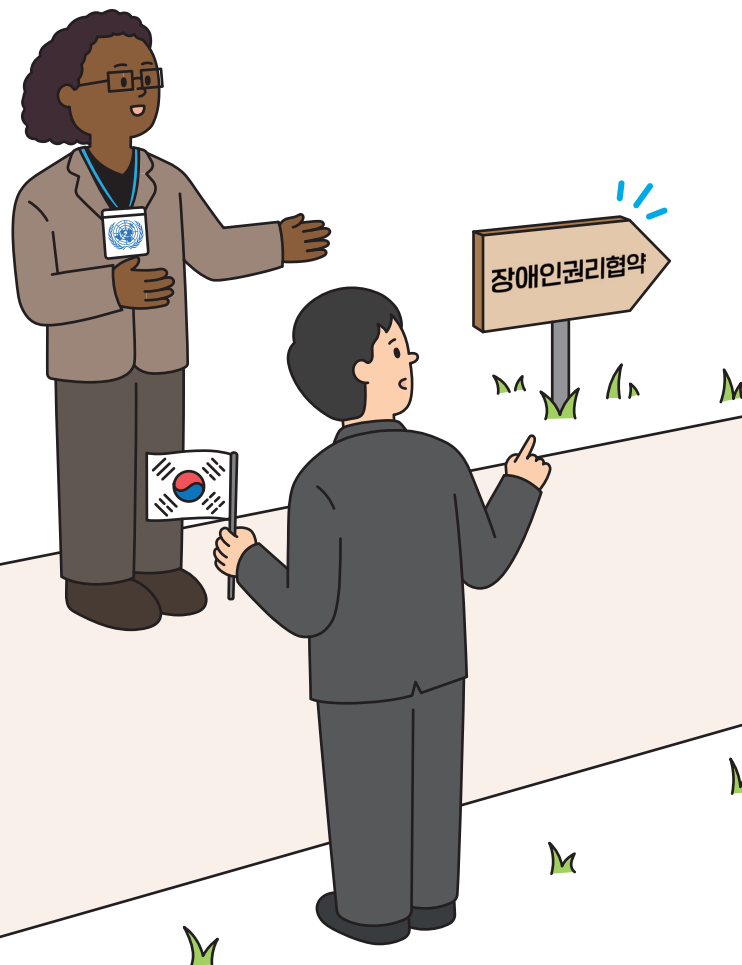
직권조사를 신청하고 싶다면 피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사무국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일 주소 petitions@ohchr.org

- 모든 내용과 자료는 유엔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써야 합니다.
- 피해 사건이 일어난 국가의 이름을 쓰고, 직권조사를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써야 합니다.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자료에 써야 합니다.
- 시민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직권조사를 신청할 때는 단체를 설명하는 내용도 써야 합니다.
-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피해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중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쓰면 좋습니다.
-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에 날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쓰면 좋습니다.
- 자료는 유엔에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에서 워드 파일(.docx)은 열어볼 수 있지만, 한글 파일(.hwp)은 열어볼 수 없습니다.

9장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진정이나 직권조사로 내린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을 대한민국이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따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요청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요청한 내용을 대한민국이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빨리 지켜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록 1 유엔 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서식 (한국어 번역본)



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서식

서식의 모든 항목에 답변을 적어 주십시오.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된 내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서식에 따라 작성된 진정서를 기반으로 인권조약기구에서 귀하가 제기한 진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추가 사실 정보를 첨부파일(첨부파일은 1만 단어로 제한)로 제출하십시오. 이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진정을 제출하는 위원회의 이름

항목을 선택하세요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 ▶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CCPR), 자유권 규약 관련
-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 ▶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 ▶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 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 ▶ 강제실종위원회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CED)

2. 당사국 또는 관련 당사국

3. 진정인

이름 _____

성 _____

생년월일 _____

국적 _____

4. 진정인의 연락처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5. 피해자 (진정인과 다른 경우)

이름 _____
성 _____
생년월일 _____
국적 _____

6.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 (다른 사람이 진정인을 대리하는 경우)

이름 _____
성 _____
이메일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7. 위원회의 최종결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기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요

8. 다른 지역적 또는 국제적 조사나 구제절차를 이용해 동일 사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예’로 답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절차의 이름, 제출 날짜, 제출자, 제기한 주장, 채택된 결정을 명시해 주십시오.

9. 임시조치(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예방을 위해) 또는
보호조치(진정인 또는 피해자, 그 가족이나 대리인에 대한 피해 또는 보복 방지를 위해)를 요청하십니까?

☐ 예 ☐ 아니요

▶ ‘예’로 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명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적으세요.

10. 사실관계 [2,500 단어로 제한]

사건의 주요 사실을 시간순으로 요약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날짜, 사법적·행정적 구제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적어 주십시오. 일반적인 상황 정보는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협약 위반에 관한 주장은 포함하지 마세요(아래 11번에 포함되어야 함). 국내 구제절차의 정보를 적어 주세요.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취한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법원이나 행정당국에 요청한 단계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각각 제출한 날짜와 내용, 제출자, 결정 내용과 결정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11. 주장 [600 단어로 제한]

귀하가 작성한 사실과 상황이 진정한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그것이 왜 권리 침해라고 생각 하는지를 적어 주십시오(가능한 한 관련 협약의 조항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12. 날짜, 장소 및 서명

날짜

장소

진정인과 피해자의 서명(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르고, 피해자가 서명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의 서명(만약 다른 사람이 진정을 대리하는 경우)

- ▶ 참고: 다음 두 개 파일을 보내십시오. • word 문서 파일(서명이 필요하지 않음)
• 서명한 문서 파일(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송부)

13. 서류 목록

모든 문서가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연속번호를 부여했는지, 라벨을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예: 부록 1(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 - 2020년 6월 4일), 부록 2(지방법원 판결문 - 2020년 7월 8일)]

- 귀하의 청구에 대한 국내 법원(및 행정 당국)의 결정. 만약 위에서 제시한 업무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각 결정의 요약본
- 기타 다른 국제적인 조사나 구제절차를 이용한 경우 그 청구서와 결정문
- 귀하의 진정 내용을 입증하는 모든 문서 또는 기타 입증 증거. 관련이 있다면 의학적 또는 심리적 보고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국내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관계 법령

14. 개인진정 제출 방법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개인진정서와 첨부 문서를 이메일(petitions@ohchr.org)로 보내 주십시오.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종이 문서(단면으로 20쪽 이내)를 다음 우편 주소로 보내십시오.

우편 주소

Petitions and Urgent Actions Section

OHCHR, Palais des Nations, Avenue de la Paix 8-14, 1211 Geneva, Switzerland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종이 문서로 된 진정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원본을 제출하지 마시고 사본으로 제출하십시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록 2 유엔 조약기구 개인진정 제출 지침 (한국어 번역본)



유엔 조약기구에 개인진정을 제출하는 방법

1. 개인진정을 접수하는 위원회

개인진정을 제출할 조약기구 단 한 곳(이하, 위원회)을 선택하십시오. 개인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조약기구는 인권위원회(CCPR), 고문방지위원회(CAT), 사회권위원회(CESCR), 아동권리위원회(CRC),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강제실종위원회(CED)입니다.

2. 당사국

국가가 관련 인권조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개인진정 절차가 규정된 관련 인권조약의 조항에 따라 선언함으로써 위원회의 개인진정 접수 권한을 인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가가 각 위원회의 개인진정 접수 권한을 인정했는지 여부는 treaties.un.org/Pages/Treaties.aspx?id=4&subid=A&lang=en에서 확인하십시오.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당사국이 위원회의 개인진정 접수 권한을 인정한 날짜 이후(국가가 관련 선택의정서를 비준했거나 선언한 이후)에 발생했는지, 또는 그러한 침해가 해당 날짜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7. 진정인과 피해자

진정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진정인과 피해자가 동일합니다. 대부분 위원회에서는 최종결정문에서 진정인을 ‘작성자(author)’로 지칭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예: 사망, 실종, 구금)로 진정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와의 정당한 이해(legitimate interest)를 증명할 수 있는 진정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8-9. 대리인

법률적(변호사)으로 또는 비(非)법률적(예: 인권단체 등)으로 진정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진정을 반드시 변호사가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법률 자문을 받으면 제출물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유엔이 개인진정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을 제공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10. 진정인/피해자 이름의 익명처리

개인진정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국이 권리 침해 혐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합니다. 익명으로 된 개인진정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나 작성자가 위원회의 최종결정문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결정문은 공개되므로 진정인이 최종결정문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결정문의 일반적인 공개 수준(이는 인터넷 전파를 포함하므로 정보 정정이나 삭제 사실상 불가능함)을 고려할 때, 최종결정문이 발표된 후 제출한 익명처리 요청에 유엔이 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1. 다른 국제 인권 메커니즘 이용

동일한 진정을 다른 조약기구나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등 지역 인권 메커니즘에 제출한 경우, 대다수 위원회는 해당 진정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사회는 이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진정이 더는 다른 국제적 해결 절차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accession) 시점에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개인진정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임시 조치와 보호 조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임시 또는 보호 조치가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이 위원회의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도록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란 그 성격상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의미합니다.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작성자는 위험이 실재하며, 위험이 현실화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해당 위험이 특정 개인에게 가해지는 위험(통상적 환경 위험이 아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시 조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형 집행 유예, 작성자가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는 것을 유예하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진정인은 위원회의 최종결정, 다른 말로 ‘견해(Views)’가 채택되기 전에 언제든지 위원회에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진정인이 예방하려는 행위가 현실화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진정인은 또한 개인진정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사, 증인, 가족 등 해당 개인진정에 연루된 개인을 보복에서 보호하는 보호 조치 채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위험은 개인진정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보호 조치 요청은 ‘견해’의 후속 절차(위반했다는 결정이 채택된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국내 구제절차 소진 등의 사실관계

진정인은 국내 수준에서 시도한 구제절차와 국내 관계 당국에서 채택한 결정 등 사안의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진정인은 위원회에 심리를 청구하기 전에 당사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구제절차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국의 사법 제도를 이용해 최종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그러한 구제절차가 부당하게 지체되거나, 여타의 사유로 효과적이지 않거나, 진정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진정인은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구제절차의 효과가 의심된다는 주장만으로 국내 구제절차를 소진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청구 이유(claim)를 이 부분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청구이유는 아래의 제14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진정은 국내 구제절차가 모두 소진된 후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진정을 지연하여 제출하면 당사국이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개인진정을 제출하면 청원권 남용으로 간주하여 심리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구제절차가 소진된 시점부터 개인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위원회에 따라 다릅니다.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6개월
-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 1년
- 인권이사회 : 5년

다른 위원회는 개인진정 제출 기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14. 청구이유

진정인은 기술한 사실관계가 관련 조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진정인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관련 조약의 특정 조항을 인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진정인은 침해된 조약상 권리가 무엇이며, 당사국이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기술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밝혀야 합니다. 또 위원회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반했다고 결정한다면 작성자가 당사국에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관계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개인진정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5-17. 개인진정 제출

개인진정은 서면으로 읽기 쉽도록 작성하고 되도록 타이핑하며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자 수단으로 제출하는 진정서에는 전자서명을 하거나 수기로 서명한 후 스캔본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청원 및 긴급조치 부서(OHCHR Petitions and Urgent Actions Section, PUAS)의 이메일(petitions@ohchr.org)로 보내야 합니다. 또 서명하지 않은 워드 버전(word version)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수단으로 개인진정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종이로 된 개인진정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무국의 업무 언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된 개인진정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가 이들 언어 중 하나로 되어 있지 않다면 비공식 번역 요약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문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속서에는 국가 또는 국제 수준에서 채택된 모든 결정, 진단서 등 여타 관련 공식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나 청구이유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개인진정 절차 진행에 필요한 필수 정보가 부족하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청원 및 긴급행동국(PUAS)은 진정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개인진정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PUAS와 교신하는 데 성실히 임해야 하며, 요청받은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요청 일부터 2년 이내에 정보를 받지 못하면 해당 파일은 폐쇄됩니다.

부록 3 참고 자료



참고 웹사이트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인진정 웹사이트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individual-communications>
- 유엔 인권조약에 따른 개인진정 절차 안내서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2021-08/FactSheet7Rev.2.pdf>
- 유엔 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서식 및 지침
<https://www.ohchr.org/en/documents/tools-and-resources/form-and-guidance-submitting-individual-communication-treaty-bodies>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직권조사 절차 소개 웹페이지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pd/inquiry-procedure>
- 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의 직권조사 절차 소개 웹페이지
<https://www.internationaldisabilityalliance.org/inquiry-procedure-crpd-cmmttee>
-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개인진정 결정례 데이터베이스
<https://juris.ohchr.org>
- 유엔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직권조사 자료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TreatyID=4&DocTypeCategoryID=7

참고 도서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7)
- 사례로 보는 UN장애인권리협약(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 – 50개 조항으로 살펴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2개 단체 공동 발행, 2013)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쉬운 설명자료(EASY READ)인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Inspired Service, 2007)’을 한국에 맞게 번안한 책
-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국가인권위원회, 2020)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1,2호) 안내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3,4호) 안내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6호) 안내서(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이행 방안을 위한 호주 사례 소개 연구보고서(한국장애인연맹, 2003)
 - ▶ 호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개인진정 사례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진정 경험을 소개한 책

부록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연락처 정보)



현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개인진정 제기나 직권조사 요청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단체와 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상담 및 인권침해 상담 단체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

전자우편 ddask420@naver.com

홈페이지 www.15771330.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08호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상담전화 1577-5364

전자우편 cowalk1004@daum.net

홈페이지 www.cowalk.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 신고 가능)

홈페이지 www.naapd.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길 21, 1412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상담전화번호 1522-2882

홈페이지 www.broso.or.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관련 활동 단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연대

(사무국) 한국장애포럼(KDF) 02-6954-7418

전자우편 kdf@thekdf.org

홈페이지 thekdf.org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08호

(가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연대

(사무국)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02-457-0427

전자우편 dpikorea@dpikorea.org

홈페이지 dpikorea.org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405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

(사무국)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02-3472-3556

전자우편 rikorea2012@hanmail.net

홈페이지 www.freeget.net

관계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 국번 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전자우편 hoso@humanrights.go.kr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 수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거나 이메일에 상담 내용을 보내주시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화상 수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콜 110번(110번 홈페이지 접속 <https://www.110.go.kr/consult/cam.do>)의 수어상담 통역서비스나 손말이음센터의 영상중계서비스(국번 없이 107)를 이용하시면 근무시간 중에 사전 예약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국번 없이 1331)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담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 044-202-3304(장애인권익지원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담당)

홈페이지 www.mohw.go.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장애인개발원

전화 02-3433-0647(국제협력팀)

전자우편 inco@koddi.or.kr

홈페이지 www.koddi.or.k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부록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전문 (한국어 번역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협약상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개인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2.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가. 통보가 익명인 경우

나. 통보가 통보제출권의 남용을 구성하거나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다.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 중인 경우

라.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이 규정은 구제절차의 이용이 비합리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나 효과적인 구제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 통보가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바.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다만, 그러한 사실이 발효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통보를 비공개로 당사국에 주지시킨다. 접수국은 그 사안과 그 국가가 취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조치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기된 규정 위반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른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그 통보의 심리적격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5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검토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검토한 후 제안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당사국과 청원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보여 주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당사국에 그 정보를 검토하는 데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그 밖의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 수행 및 위원회에 대한 긴급 보고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그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제7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제4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 관련 당사국에 그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제10조 이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협약에 서명한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1조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이 의정서 서명국의 비준 대상이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고 이 의정서에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정식 확인 대상이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였으나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 지역의 주권 국가로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협약과 이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협약과 이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알린다.

2. 이 의정서에서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 회의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13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정식 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 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의정서는 이러한 문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1. 이 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 표시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부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과 이후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도달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 이후부터는, 그 개정안은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제16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이 의정서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18조 이 의정서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편집 반재윤

그림·디자인 이준엽

쉬운 정보 감수 김상욱 이주형 장지용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포럼

ISBN ISBN 979-11-7214-007-6 13360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70-01

- 이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한 저작물은 아니므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 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